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3.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 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3.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서민우 의원 등 6명
- 발의일자: 2024. 2. 28.(수)
- 회부일자: 2024. 2. 28.(수)
- 검토기간: 2024. 2. 28.(수) ~ 3. 6.(수)

2. 개정이유

- 달서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규정(안 제5조의 2)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달서구 관광진흥을 위한 기념품의 무상제공을 위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비롯한 65개의 문화관광축제와 장미꽃 필 무렵 축제를 비롯한 981개의 전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신들의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달서구 또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달토기빡 등을 비롯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통해 달서구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물의 제작 및 배부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 개정조례안은 홍보물 등의 무상제공을 위해 이를 조례로 명시하도록 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정책의 시의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광상품의 제작 및 배부가 그 목적에 부합하고, 달서구의 관광진흥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업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차. <생략>

5·6. <생략>

③~⑤ <생략>